



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나눔티켓

나눔티켓은 저소득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의 제고,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/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입니다.

나눔티켓 사업개요

- 참여대상 : 공연 전시, 체험 등 관람티켓을 기부하고자 하는 예술단체 및 개인 기획사 등
- 내용 : 전체 객석수의 5% 이내로 객석 기부(무료티켓 또는 할인티켓)
- 활용처 : 문화누리카드소지자(기초 및 차상위계층) 문화 서비스 제공
- 신청기간 : 상시접수 및 등록가능

나눔티켓 참여방법

1. 참여신청(신청서 작성)

- 할인을 책정 : 50~80%가 원칙이나 자체할인율이 지정되어 있는 공연의 경우 50% 미만의 공연도 등록가능
- 좌석지정 : 비지정석으로 예매되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 지정
- 제출서류 : 신청서, 공연포스터, 웹전단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장부가액 확인서(신청서)
- * 첨부파일은 30MB 이하로 전송, 장부가액 확인서 작성법은 하단 참조
- 제출처 및 담당자 : glasskang@ggcf.or.kr /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 강유리 tel.031-231-7287

2. 판매현황 조회(관리자 계정 이용)

- 관리자계정 : 공연정보 수정, 예매내역 확인, 정산서 승인 등
- 티켓수량/회차 변경 : 공연 전일 17시까지 기 판매분 외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.
(단, 나눔티켓 담당자에게 이메일, 전화로 요청)

3. 티켓 교부(현장 좌석 지정)

- 예매자리스트 확인 후 공연 당일 현장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증 제시자에게
- 예매자리스트는 판매마감 후(공연 전일 17시) 담당자에게 자동 이메일 발송(신청 시 담당자 이메일 반드시 표기)
- 예매자 본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미지참자의 경우 티켓 수령 제한할 수 있음



4. 정산 진행(공연 종료 후 7~10일 소요)

- 공연 종료 후 익일 정산서 발행(오픈런 공연의 경우 월별 중간정산 가능)
- 무료티켓은 정산절차 없음
- 소요기간 : 7일~10일(매주 화(수)요일 오후 '한국문화예술위원회'로 입금)
- 판매수수료 지원 : 관객 결제 시 발생하는 무통장/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나눔티켓에서 부담함
- 티켓판매금에 대한 세금신고는 귀 단체의 책임하에 있음.

나눔티켓 참여혜택

1. 홍보 협력

- 홈페이지 배너 : 메인 롤링배너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메인메너 게시
 - 회원 소식지 : 매주 나눔티켓 회원 대상 발송
 - SMS 문자 발송 : 특정 회원 대상에 공연 홍보 문자발송
 - 경기문화재단 공식 SNS (페이스북), 네이버 카페 홍보 협조
- ※ 신청방법 : 나눔티켓 담당자에게 이메일/전화/기획사게시판으로 요청

2. 세제 혜택

- 개인소득금액 100%, 법인단체 50%까지 손금산입
 -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실 경우 장부가액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기부영수증 발급처리
-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정기부금 단체(관련법령 '소득세법 제 34조, 법인세법 제 24조')로 법인세/소득세에서 손금(필요경비) 인정한도가 높습니다.

<장부가액 확인서 작성법>

장부가액이란?

제작단가(원가) 산정이 어려운 현물(티켓 등) 기부 시 정상가가 아닌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산출금액에 적용됩니다.

- 장부가액은 티켓 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해당 되는 금액으로 기부자가 작성한 [장부가액 확인서]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며, 이에 대한 책임(사실여부 확인 등)은 기부자에게 있습니다.
- 단, 기부자 또는 단체의 장부가액 확인이 어려워 별도 산정이 요구되는 경우, 판매가격의 70% 이내로 산정합니다.
- 기부 금액 산출은 공연 종료이후, 최종 관람신청 인원으로 책정됩니다.
 - 무료티켓 : 장부가액에 대해 100% 기부인정
 - 할인티켓 : 장부가액에 할인 판매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부인정
- 기부금 영수증 발행주기 : 3개월 주기, 연 4회 발급(3,6,9,12월)